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심사보고서

1991. 9. 28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91. 9. 16

나. 제안자 : 달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 91. 9. 25

라. 상정일자 : 91. 9. 26

2. 제안설명의요지

가. 제안이유 : 시·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서 하던 의료보호 기간 연장승인등에 관한 사항이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의료보호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됨으로써 각종 심의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료보호 행정을 구현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편익을 도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조례 환자의 진료기간, 입원기간, 진료지구등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심의위원회에 승인하여 연장진료를 받을수 있는 사항들이며, 각 조항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부칙에 “이 조례로 1991년 9월 6일로 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19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가. 찬 성 : 위원회의 구성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각종 심의사항 신속히 처리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각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만, 부칙 “이 조례는 91년 9월 6일 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음.

나. 반 대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 조례부칙 “이 조례는 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부터 시행하고 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

6. 수정가결

7. 심사보고서 유첨

가. 제정 조례안 1부

나. 수정 조례안 1부

다. 조문 대비표 1부